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06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이용우·임미애·김기표

송재봉 · 김남근 · 이수진

송옥주・양부남・최민희

김영환 · 이광희 · 허성무

김 윤 의원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 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차장에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친환경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친환경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 전용 스프링클러의 설치 등화재안전성능보강과 화재진압용 노즐, 소화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소

화용수설비를 갖추도록 법률로 정함으로써 친환경적 자동차로 인한화재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진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병, 전용 스프링클러의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보강과 화재진압용 노즐, 소화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용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4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조제5항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진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방화벽, 전용 스프링클		
	러의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보		
	강과 화재진압용 노즐, 소화수		
	조,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용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군수	제24조(영업정지 등)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			
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			
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			
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제6조제5항에 따른 친환		

	경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안
	전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